

(세무과)

면허세 납세의식 강화를 통한 징수율 향상

□ 사업개요

- 면허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한 과세자료 정비 철저
- 신고 후 납기 내 미 납부자에 대한 직권고지 관리 강화
- 폐업 현장조사 및 체납자 면허취소 예고와 면허취소 통보

□ 추진계획

- 정기분 면허세 자료정비 및 관련기관 자료협조 : 2007. 1. 5한
 - 세무서 휴폐업자료 징구 등 변동자료 재정비 : 2007. 1월
 - 체납분석 및 폐업 등 현장조사 : 2007. 3 ~ 12월
 - 면허 후 미납자에 대한 직권 납부고지서 발송 : 매월 10일
 - 면허세 체납자 징수독려 및 면허취소 : 2007. 3 ~ 12월
 - 체납고지서 2회 이상 발송 후 면허취소 예고문 발송 : 2007. 8 ~ 9월
 - 체납자 및 면허 미반납 폐업자 면허취소 통보 : 2007. 10 ~ 11월
- (근거 : 지방세법 제169조)

□ 기대효과

- 징수율 향상의 세수증대, 지방세 전반의 납세의식 고양 효과
-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현장조사로 징수율 향상 도모
- 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예고로 납세의식 강화

부동산 취득세 세원관리 강화

□ 사업개요

-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비영리사업자 등 비과세·감면 물건의 서류조사 및 현지 확인으로 탈루세원 방지
- 사실과세를 위한 중과세대상 사업장 현지조사
- 과세물건 적기 조사 및 납부기한 사전 안내 실시로 가산세 등 불복민원 최소화

□ 추진계획

-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실시 : 연중실시
 - 법인현황관리를 통해 관내법인을 2~3년 주기로 조사 실시
- 비과세·감면대상의 철저한 조사 및 사후관리
 - 비영리사업자 비과세 물건 조사 : 2007. 3~5월 실시
 - 아파트형공장 감면목적 사용여부 : 2007. 9~11월 실시
 - 기타 비과세·감면물건 조사 : 연중실시
- 중과세 대상 물건 현지조사
 - 사치성재산(유홍주점 16개소) : 2007. 7월 실시
 - 법인 중과세(본점용, 대도시내 등기) : 법인세무조사시 병행 실시
- 과세자료 사전안내로 자발적 납세유도 : 연중실시
 - 납부기한 안내문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등

□ 기대효과

- 취득세 과세물건 주기적 점검으로 지방세 탈루세원 예방
-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로 신뢰 세무행정 구축

효율적인 주민세 부과·징수

□ 사업개요

- 신속하고 철저한 과세자료의 정비를 통해 정확한 부과
- 부과 전 과세예고
-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원인 분석

□ 추진계획

- 국세청 통보자료의 철저한 대사 및 부과(매월)
- 휴·폐업 및 인적·물적 설비 없는 사업장 현지 조사
- 신고납부기한 미도래자 및 고액부과자에 대한 사전 납부안내
- 주민세(특별징수분) 미신고 납부자 일괄부과
 - 2007. 3월, 10월 부과 : 부과 전 과세 예고문 발송
- 사업소세(재산할, 종업원할) 미납자 조사 및 부과 : 매월
 -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및 납부안내문 발송 : 2007. 6월
- 고지서 반송분 소재지 재확인 후 우편 및 출장 재송달
 - 주민등록지, 국세청, 대법원등 상호조회를 통한 소재지 파악
- 적극적인 홍보운동 전개
 - 관련단체(세무사, 공인회계사), 인터넷, 안내문, 시정홍보지, 언론매체 등

□ 기대효과

-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체납율을 낮춤으로써 행정력 낭비 최소화
- 납세자에 대한 과세 전 안내로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고 민원 발생 사전예방

안정적인 재산세 부과·징수

□ 사업개요

- 징수목표액 : 118천건 6,175백만원
 - 주택분 931백만원, 건물분 1,116백만원, 토지분 4,128백만원
- 과세기준일 : 매년 6. 1.
- 납 기 : 2007. 7월(주택분 1/2, 건물분), 9월(주택분 1/2, 토지분)

□ 추진계획

- 부과품질 향상을 위한 정교한 과세자료 정비
 - 과세자료유형별 현황조사
 - 중과세·비과세·감면대상 현장위주의 합동조사로 누락세원방지
- 과세전 홍보강화
 - 사전안내문 개별발송 : 재산세관련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침 및 서민의 재산세 부담 해소 등의 세법개정 근본취지 홍보
 -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문발송 : 인터넷납부, 카드납부, 무통장입금방법, 거소지 신청 등
- 재산세 고액납세자 후견인 지정 : 세무과 전직원
- 등기반송고지서 직접전달 징수율 제고
- 현년도 재산세 징수강화로 이월체납액 최소화
 - 체납분 고지서 분기별 발송 및 압류 등의 예고서 발송
 - 소액분 (주택분 재산세)에 대한 고지서 발송 및 체납내역 발송
 - SMS 체납 납부안내 독려(납기말, 납기후)

□ 기대효과

- 정확한 과세로 징수율제고 및 지방세수 확충
- 사전납부안내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안정적인 재정확보
- 납부의지가 미약한 소액의 주택분재산세 납부의식 고취

납세자 위주의 자동차세 부과·징수

□ 사업개요

- 비과세·감면차량의 철저한 정비로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
- 소유권 변동 및 말소차량 과세자료 정리 철저
- 납세자의 납부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납세홍보

□ 추진계획

- 2007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(연 2회 : 6월, 12월)
 - 부과예상: 51,500대 (오정구 차량현황 : 53,593대)
 - 개인별 사전안내문 발송(40,000건) : 2007. 5월 중
 - 자동차세 선납(10% 할인) 안내 및 고지서 발송(1월 4,000여명)
 - 과세자료 정리
 - 과세기간 내 소유권 변동 및 말소차량 자동차세대장 자료입력
 - 비과세 및 장애인·유공자 감면차량
 - 다양한 납부홍보 강화 : 자동이체 안내문 발송 유선방송, 현수막, 휴대폰문자서비스 활용 등
- 자동차세 수시분 부과 및 과오납금 환부
 - 수시분 부과 : 연간 5,500건(매월 고지)
 - 자동차 매매 등 승계취득에 따른 보유기간 일할계산 부과
 - 폐차 등 말소차량 잔여 보유기간 부과
 - 자동차세 과오납금 환부 : 연간 2,400건
 - 선납 및 정기분 납부 후 소유권 변동차량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기 납부세액 감액 및 과오납금 환부
 - 자동차 매매 등 승계취득과 폐차 등 말소등록자료 수집
⇒ 감액 및 환부지급 통지서 및 SMS 발송

□ 기대효과

-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신뢰세정 및 고객만족 실현
-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자진납세 풍토 조성

효율적인 체납액 정리

□ 사업개요(목표)

- 정리목표액 : 체납액의 40% 이상 정리(4,442백만원)
- 2006년도 체납액 이월예상액 : 11,105백만원
 - 현년도 체납액 이월예상액 : 2,984백만원
 - 과년도 체납액 이월예상액 : 8,121백만원

□ 추진계획

- 팀별 전직원 체납 목표정리제 운영 : 7개팀 26명
 - 관내 고액체납자 정리담당자 지정 : 2백만원 이상
 - 수도권 체납자 및 관외 체납자 책임정리제 추진 : 세무과 전직원
- 고질체납자에 대한 직·간접 규제 강화
 - 전국재산 과세자료 조회 : 연2회
 - 신속한 재산압류로 조세채권 일실 방지
 - 부동산 적기 압류 : 400건(30만원 이상 체납자)
 - 자동차 압류 : 4,000건
 - 기타 채권 압류 : 급여, 예금, 매출채권 및 분양권 압류 등
 - 관허 사업 제한 : 20건 및 예고 : 100건(관내 및 허가기관 협조)
-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계고 : 1,500대
 - 체납차량 번호판 상설영치반 운영 : 2개반 4명(공공근로자 활용)
 -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영치 실시 : 연 4회(분기별 1회)
- 체납법인 정리강화 :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결손
-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및 추적징수
 - 실익 없는 압류재산 부분 결손처분
 - 사망·행불·무재산자 및 소액징수불능 체납자 결손처분
- 납세 편의시책 적극적인 홍보
 - 신용카드, 무통장입금, 자동이체, 인터넷 납부 등

□ 기대효과

- 강력한 징수의지와 행정력 집주로 체납액 징수율 향상
- 자진 납세의식 고취 및 자주재원 확충

공정한 과세표준 조사·평가

□ 사업개요

- 조사대상 : 4,000여건 (단독 : 1,600여건, 다가구 : 2,400여건)
-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와 주택가격 비준표 적용
- 인근가격과 균형유지 등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
-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준수

□ 추진계획

-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: 2007. 1. 1. ~ 4. 27
 - 주택특성조사(토지 : 19개 항목, 건물 : 18개 항목)
- 복합물건(유형주택)별 상세현황조사표 작성 : 1,300여건
 - 겸용주택 용도 현황 조사안내문 개별발송
-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: 20일간
- 개별주택가격 결정 : 2007. 4. 30
-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 조정 결정 : 2007. 5. 1. ~ 6. 30
-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조사·결정공시 : 2007. 7. 1. ~ 9. 30
- 건물시가표준액 조사 : 1회(12월)
- 도축세시가표준액 조사 : 2회(6월, 12월)

□ 기대효과

-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조사·산정의 적정성 및 결정·공시의 신뢰성 제고
-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통합평가에 따른 주택별 과세형평 기여